

재해개요

2020. 8.23(일) 13:30분경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달비계 작업대에서 작업 중 옥상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용 구조물 일부가 탈락·파손되면서 아래로 낙하하여 재해자를 타격(추정), 재해자가 약 54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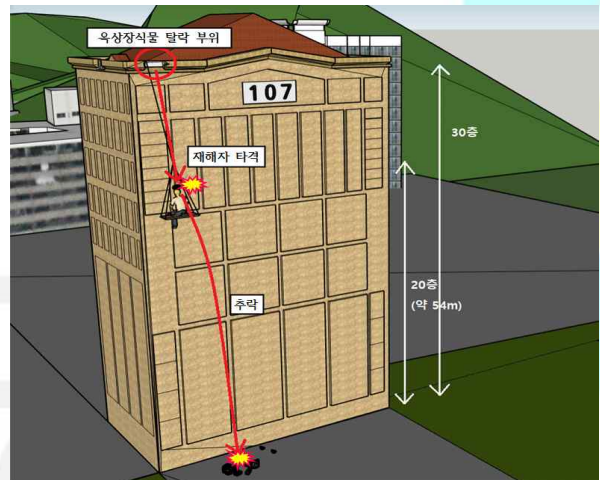
【 유사 재해사례 】

- ◆ 2020년 4월 27일(월) 12:40경 인천 동구에 소재한 건물 외벽 도장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이 달비계를 이용하여 건물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 로프를 고정한 옥상난간 벽돌이 파손되어 떨어져 재해자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
- ◆ 2020. 5. 12.(화) 15:30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 소재 아파트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외벽 재도장을 위해 달비계 작업 중 작업 위치를 고정하기 위한 보조 로프와의 매듭이 갑자기 풀리면서,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(H=45.2m) 사망

재해상황도



< 달비계 작업 형태 >



< 재해발생 상황도 >

재해발생원인

- 달비계 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
 - 달비계 이용 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(추락방지대)를 지급하고 착용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하나 미실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함.

재발방지대책

- 달비계 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철저
 - 달비계 이용 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(추락방지대)를 지급하고 착용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.
- ※작업 전 옥상 장식물의 부착상태가 위험함을 인지한 상태에서는 달비계 작업로프의 입력이 장식물에 가해지지 않도록 철재구조의 덮개 등으로 장식물을 보호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.